

정 관



GS건설주식회사 정관

제정	1969. 12. 19	개정	1993. 2. 26
개정	1970. 3. 13	"	1994. 2. 25
"	1973. 10. 1	"	1995. 2. 24
"	1974. 5. 25	"	1996. 2. 23
"	1975. 11. 27	"	1997. 2. 25
"	1975. 11. 28	"	1998. 3. 26
"	1975. 12. 17	"	1999. 2. 25
"	1976. 6. 11	"	1999. 6. 9
"	1977. 2. 25	"	2000. 3. 17
"	1978. 1. 25	"	2001. 3. 2
"	1979. 1. 4	"	2002. 3. 20
"	1979. 9. 4	"	2003. 2. 26
"	1980. 2. 25	"	2005. 3. 18
"	1980. 6. 23	"	2008. 3. 7
"	1981. 2. 27	"	2009. 3. 20
"	1982. 2. 25	"	2010. 3. 19
"	1983. 2. 25	"	2011. 3. 25
"	1985. 2. 23	"	2012. 3. 23
"	1986. 2. 28	"	2014. 3. 21
"	1987. 2. 27	"	2017. 3. 24
"	1988. 2. 26	"	2018. 3. 23
"	1989. 2. 24	"	2019. 3. 22
"	1990. 2. 23	"	2020. 3. 27
"	1991. 2. 26	"	2021. 3. 26
"	1992. 2. 27	"	2022. 3. 25
		"	2024. 3. 29
		"	2025. 3. 25
		"	2026. 3. 24

제1장 총 칙

제1조(상호) 본 회사는 GS건설주식회사라 칭하며, 한글로는 지에스건설주식회사라 하고 영문으로는 “GS Engineering & Construction Corp.” 로 한다.

제2조(목적) 본 회사는 국내외에서 다음의 사업을 경영함을 목적으로 한다.

1. 토목, 건축, 전기, 정보통신, 철강재설치, 포장, 항만건설, 준설, 삭도설치, 조경, 산업설비공사업 및 운영업
2. 주택신축판매, 보수유지관리 및 임대업
3. 소방설비공사업
4. 해외에서의 전문 및 종합건설업
5. 부동산의 매매 및 임대업
6. 체육시설, 운동경기장, 운동설비의 건설 및 운영업
7. 유기장 영업
8. 임산 과수원에 및 목축업
9. 석산개발, 골재, 레미콘, PRECAST CONCRETE 제품, 콘크리트 제품, 시멘트, 알미늄 및 기타 건설자재의 생산판매업
10. 유통단지의 설치운영 및 관리업
11. 해외자원개발사업
12. 중기임대업 및 정비업
13. 환경오염방지사설업
14. 일반폐기물 및 특정폐기물 처리시설 설계, 시공업 및 운영업
15. 하,폐수 처리시설 설계, 시공업 및 운영업
16. 군납공사업
17. 무역업
18. 문화재보수공사업
19. 액화석유가스 시공업
20. 관광숙박업 및 관광객 이용시설업
21. 집단에너지시설 설치 및 운영업
22. 가스공급시설 설치 및 운영업
23. 플랜트 엔지니어링 설계, 제작, 구매, 시공 및 시운전업
24. 공유수면매립업
25. 시설물 유지관리업
26. 도시개발, 산지개발, 택지조성 등 부동산 개발업
27. 물품매도확약서 발행업
28. 철도, 고속전철, 경전철, 피.알.티(개인레도 교통)의 건설, 운영 및 역세권 개발사업
29. 상수도시설 설계, 시공 및 운영업
30. 발전시설 설치 및 운영업

31. 공원 및 유원지운영업
32. 유료도로운영업
33. 주차장 건설 및 운영업
34. 일반도소매업
35. 철구제품 제조 판매업
36. 음식 및 숙박업
37. 엔지니어링활동업
38. 종합감리업 및 설계감리업
39. 건설부문 수탁연구용역업
40. 가구류 제조판매업
41. 성인복지시설 및 노인복지시설 건설 및 운영업
42. 일반측량업
43. 산업설비용역업 및 환경영향평가대행업
44. 부동산의 관리 · 처분 및 개발신탁업
45. 지하개발사업
46. 대지조성사업
47. 시설물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업
48. 공인시험 · 검사업
49. 분뇨처리시설 및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 등의 설계 · 시공업 및 운영업
50. 건설사업관리업
51. 관광지 조성 및 운영업
52. 화물터미널, 국제회의시설 건설 및 운영업
53. 건축설계업
54. 오수정화시설 설계시공업
55. 폐기물 수집운반업
56. 에너지 관리진단업
57. 에너지 사용계획 수립 대행업
58. 전기/전자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및 부대 광고사업
59. 무역대리업
60. 군납업
61. 해외건설 엔지니어링업
62. 압력용기류 및 열교환기류와 공기조화기의 제작 및 판매업
63. 연소기계 기구의 제작 및 판매업
64. 지적소유권과 상업기술상 정보의 매매 및 주선
65. 에너지 절약형 시설투자에 관한 사업등 에너지절약 전문기관의 수행사업
66. 전력시설물 설계 및 공사감리업
67. 암석설비 · 비축기지 · 터널 · 군사시설 · 민방위시설등 공사의 계획 · 자문 · 설계와 감리업
68. 지하시설 측량업 및 측량업 일체
69. 교통영향평가 대행업
70. 경관영향평가 대행업
71. 재해영향평가 대행업
72. 수치지도 제작업
73. 교육기관의 설립 및 운영업
74. 송유관 및 가스수송관 설계, 감리, 시공업

75. 플랜트 설비의 유지보수 및 운전사업
76. 자원재활용 플랜트 설계, 시공업
77. 건축 설비의 설계, 시공 및 시운전업
78. 전자 상거래업
79. 난방시공업
80. 철근 가공 및 설치 판매업
81. 신·재생에너지 전문업
82. 토양정화업
83. 지하수정화업
84. 부동산개발업
85. 하폐수처리수재이용업
86. 재이용시설설계시공업
87. 기계설비공사업
88. 소방시설설계업
89. 온실 및 부대시설 등 농업시설물의 설치, 운영 및 농작물의 생산, 유통
90. 스마트팜(smart farm)설치 및 운영
91. 실내장식 및 내장목공사업
92. 조립식 육식 및 육식제품의 제조, 판매 및 보수 유지관리업
93. 무형재산권, 지적재산권의 임대 및 판매업
94. 소규모 전력 중개업
95. 통신판매업
96. 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
97. 위치 정보 및 위치 기반 서비스업
98. 광고업 및 광고대행업
99. 전기 각호의 사업에 대한 투자 및 이에 부대되는 일체사업

제3조(소재지) 본 회사의 본점은 서울특별시에 두고 필요에 따라 이사회결의로 국내외의 지역에 지점 또는 영업소를 둘 수 있다.

제4조(광고방법) 본 회사의 광고는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gsenc.com>)에 게재한다. 다만, 전산장애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광고를 할 수 없을 때에는 서울특별시에서 발행되는 일간 "동아일보"와 "한국경제신문"에 한다.

제2장 주 식 · 사 채

제5조(발행할 주식의 총수) 본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는 이억주로 한다.

제6조(일주의 금액) 본 회사의 발행주식 일주의 금액은 금오천원으로 한다.

제7조(삭제)

제8조(주권의 종류) 본 회사는 주권 및 신주인수권증서를 발행하는 대신 전자등록기관의 전자등록계좌부에 주식 및 신주인수권증서에 표시되어야 할 권리를 전자등록한다.

제9조(주식의 종류)

- ①본 회사가 발행할 주식은 기명식 보통주식과 기명식 종류주식으로 한다.
- ②회사가 발행하는 종류주식은 이익배당에 관한 우선주식, 의결권배제 또는 제한에 관한 주식, 상환주식, 전환주식 및 이들의 전부 또는 일부를 혼합한 주식으로 한다

제9조의 2(종류주식의 수와 내용①)

- ①본 회사가 발행할 1종 종류주식은 무의결권 이익배당 우선주식(이하 이 조에서 “1종 종류주식”이라 함)으로 하며, 그 발행주식의 수는 발행주식총수의 2분의 1범위 내로 한다.
- ②1종 종류주식에 대하여는 액면금액을 기준으로 년 9% 이상으로 발행시에 이사회가 정한 우선 비율에 따른 금액을 현금으로 우선 배당한다.
- ③보통주식의 배당률이 종류주식의 배당률을 초과할 경우에는 그 초과분에 대하여 보통주식과 동일한 비율로 참가시켜 배당한다.
- ④1종 종류주식에 대하여 어느 사업년도에 있어서 소정의 배당을 하지 못한 경우에는 누적된 미배당분을 다음 사업년도의 배당시에 우선하여 배당한다.
- ⑤1종 종류주식에 대하여 소정의 배당을 하지 아니한다는 결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 결의가 있는 총회의 다음 총회부터 그 우선적 배당을 한다는 결의가 있는 총회의 종료시까지의 의결권이 있는 것으로 한다.
- ⑥본 회사가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1종 종류주식에 대한 신주의 배정은 유상증자 및 주식배당의 경우에는 보통주식에 배정하는 주식과 동일한 주식으로, 무상증자의 경우에는 그와 같은 종류의 주식으로 한다.

제9조의 3(종류주식의 수와 내용②)

- ①본 회사가 발행할 2종 종류주식은 무의결권 배당우선 상환주식(이하 이 조에서 “2종 종류주식”이라 한다)으로 하며, 그 발행주식의 수는 발행주식총수의 2분의 1범위내로 한다
- ②2종 종류주식에 대해서는 제9조의 2 제2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 ③2종 종류주식은 다음 각호에 의거 회사의 선택에 따라 상환할 수 있다.
 - 1.상환가액은 발행가액과 가산금액의 합으로 하며, 가산금액은 배당률, 시장상황,

- 기타 종류주식의 발행에 관련된 제반사항을 고려하여 발행시 이사회가 정한다. 다만, 상환가액을 조정할 수 있는 것으로 하려는 경우 이사회에서 상환가액을 조정할 수 있다는 뜻, 조정사유, 조정의 기준일 및 조정방법을 정하여야 한다.
2. 상환기간은 발행일로부터 10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회계연도에 대한 정기주주총회 종료일 이후 1개월이 되는 날 이내의 범위에서 이사회가 정한다. 다만, 상환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그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상환기간은 연장된다.
- 가. 상환기간 내에 상환하지 못한 경우
- 나. 우선적 배당이 완료되지 아니한 경우
3. 2종 종류주식을 일시에 또는 분할하여 상환할 수 있다. 다만, 분할상환하는 경우에는 회사가 추첨 또는 안분비례의 방법에 의하여 2종 종류주식을 정할 수 있으며, 안분비례시 발생하는 단주는 이를 상환하지 아니한다.
4. 회사는 상환대상인 주식의 취득일 2주일전에 그 사실을 그 주식의 주주 및 주주명부에 기재된 권리자에게 통지 또는 공고하여야 한다.
- ④ 2종 종류주식은 다음 각호에 의거 주주가 회사에 대하여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1. 상환가액은 발행가액과 가산금액의 합으로 하며, 가산금액은 배당률, 시장상황, 기타 종류주식의 발행에 관련된 제반사항을 고려하여 발행시 이사회가 정한다. 다만, 상환가액을 조정할 수 있는 것으로 하려는 경우 이사회에서 상환가액을 조정할 수 있다는 뜻, 조정사유, 조정의 기준일 및 조정방법을 정하여야 한다.
2. 상환청구기간은 발행일로부터 10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회계연도에 대한 정기주주총회 종료일 이후 1개월이 되는 날 이내의 범위에서 이사회가 정한다. 다만, 상환청구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그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상환청구기간은 연장된다
- 가. 상환청구기간 내에 상환하지 못한 경우
- 나. 우선적 배당이 완료되지 아니한 경우
3. 주주는 2종 종류주식 전부를 일시에 또는 이를 분할하여 상환해 줄 것을 회사에 청구할 수 있다. 다만, 회사는 상환청구 당시에 배당가능이익이 부족한 경우에는 분할상환할 수 있으며 분할상환하는 경우에는 회사가 추첨 또는 안분비례의 방법에 의하여 상환할 주식을 정할 수 있고, 안분비례시 발생하는 단주는 이를 상환하지 아니한다.
4. 상환청구주주는 2주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상환할 뜻과 상환대상주식을 회사에 통지하여야 한다.
- ⑤ 회사는 주식 취득의 대가로 현금 외의 유가증권(다른 종류의 주식은 제외한다)이나 그 밖의 자산을 교부할 수 있다.

제9조의 4(종류주식의 수와 내용③)

- ①본 회사가 발행할 3종 종류주식은 무의결권 배당우선 전환주식(이하 이 조에서 “3 종 종류주식”이라 함)으로 하며, 그 발행주식의 수는 발행주식총수의 2분의 1범위내로 한다.
- ②3종 종류주식에 대해서는 제9조의 2 제2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 ③3종 종류주식은 다음 각호에 의거 회사의 선택 또는 주주의 청구에 따라 전환할 수 있다.
 1.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의 수는 전환전의 수와 동수로 한다.
 2. 전환 또는 전환 청구할 수 있는 기간(전환기간)은 발행일로부터 1년 이상 10년 이내의 범위에서 발행 시 이사회결의로 정한다. 다만 전환기간 내에 전환권이 행사되지 아니하면, 전환기간 만료일에 전환된 것으로 본다.
 3.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은 보통주식으로 한다.
 4. 3종 종류주식은 경영상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이사회 결의로 정한 사항에 따라 회사가 전환할 수 있다.
- ④전환기간 만료일까지 소정의 배당을 완료하지 못한 경우에는 소정의 배당을 완료할 때까지 그 기간을 연장한다.

제10조(삭제)

제11조(명의개서대리인의 지정) 본 회사는 이사회 결의로써 명의개서대리인을 지정, 주식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제12조(삭제)

제13조(주식의 발행 및 배정)

- ①본 회사가 이사회 결의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다음 각호의 방식에 의한다.
 1. 주주에게 그가 가진 주식 수에 따라서 신주를 배정하기 위하여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
 2.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신기술의 도입, 재무구조의 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호 외의 방법으로 국내외 금융기관 또는 기관투자자, 개인투자자 및 법인 등 특정한 자(본 회사의 주주를 포함한다)에게 신주를 배정하기 위하여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

3.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제1호 외의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인(본 회사의 주주를 포함한다)에게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고 이에 따라 청약을 한 자에 대하여 신주를 배정하는 방식
- ②제1항 제3호의 방식으로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식으로 신주를 배정하여야 한다.
 1.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는 자의 유형을 분류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의 청약자에게 신주를 배정하는 방식
 2. 관계 법령에 따라 우리사주조합원에 대하여 신주를 배정하고 청약되지 아니한 주식까지 포함하여 불특정 다수인에게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
 3. 주주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 청약되지 아니한 주식이 있는 경우 이를 불특정 다수인에게 신주를 배정받을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
 4.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가 인수인 또는 주선인으로서 마련한 수요예측 등 관계 법규에서 정하는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특정한 유형의 자에게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
- ③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 상법 제416조제1호, 제2호, 제2호의2, 제3호 및 제4호에서 정하는 사항을 그 납입기일의 2주 전까지 주주에게 통지하거나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9에 따라 주요사항보고서를 금융위원회 및 거래소에 공시함으로써 그 통지 및 공고를 갈음할 수 있다
- ④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의 방식에 의해 신주를 발행할 경우에는 발행할 주식의 종류와 수 및 발행가격 등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 ⑤회사는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 그 기일까지 신주인수의 청약을 하지 아니하거나 그 가액을 납입하지 아니한 주식이 발생하는 경우에 그 처리방법은 발행가액의 적정성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회 결의로 정한다.
- ⑥회사는 신주를 배정하면서 발생하는 단주에 대한 처리방법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 ⑦회사는 제1항 제1호에 따라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에는 주주에게 신주인수권증서를 발행하여야 한다.

제13조의 2(시가발행)

- ①본 회사는 신주를 발행함에 있어서 그 일부 또는 전부를 시가로 발행할 수 있으며, 그 발행가액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 ②제1항의 경우 이사회는 제13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시가로 발행하는 신주식을 관계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모집하거나, 인수인에게 인수하게 할 수 있다.

제13조의 3(전환사채의 발행 및 배정)

①본 회사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사회 결의로 주주 외의 자에게 전환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 1.사채의 액면총액이 일조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신기술의 도입, 재무구조의 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3조 제1항 제1호 외의 방법으로 국내외 금융기관 또는 기관투자자, 개인투자자 및 법인 등 특정한 자(본 회사의 주주를 포함한다)에게 사채를 배정하기 위하여 사채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 2.사채의 액면총액이 일조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제13조 제1항 제1호 외의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인(본 회사의 주주를 포함한다)에게 사채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고 이에 따라 청약을 한 자에 대하여 사채를 배정하는 방식으로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②제1항 제2호의 방식으로 사채를 배정하는 경우에는 이사회 결의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식으로 사채를 배정하여야 한다.

- 1.사채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는 자의 유형을 분류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의 청약자에게 사채를 배정하는 방식
- 2.주주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사채인수의 청약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 청약되지 아니한 사채가 있는 경우 이를 불특정 다수인에게 사채를 배정받을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
- 3.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가 인수인 또는 주선인으로서 마련한 수요예측 등 관계 법규에서 정하는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특정한 유형의 자에게 사채인수의 청약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

③제1항의 전환사채에 있어서 이사회는 그 일부에 대하여만 전환권을 부여하는 조건으로도 이를 발행할 수 있다.

④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하는 주식은 사채의 액면총액 기준 팔천억원 범위내에서 보통주식, 이천억원 범위내에서 종류주식으로 하고 그 전환가액은 주식의 액면금액 또는 그 이상의 가액으로 사채발행시 이사회가 정한다.

⑤전환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은 당해 사채발행일 익일부터 그 상환기일의 직전일까지로 한다. 그러나 위 기간내에서 이사회결의로써 전환청구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⑥주식으로 전환된 경우 회사는 전환 전에 지급시기가 도래한 이자에 대하여만 이자를 지급한다.

제13조의 4(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 및 배정)

- ①본 회사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사회 결의로 주주 외의 자에게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 1.사채의 액면총액이 일조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신기술의 도입, 재무구조의 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3조 제1항 제1호 외의 방법으로 국내외 금융기관 또는 기관투자자, 개인투자자 및 법인 등 특정한 자(본 회사의 주주를 포함한다)에게 사채를 배정하기 위하여 사채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 2.사채의 액면총액이 일조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제13조 제1항 제1호 외의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인(본 회사의 주주를 포함한다)에게 사채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고 이에 따라 청약을 한 자에 대하여 사채를 배정하는 방식으로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 ②제1항 제2호의 방식으로 사채를 배정하는 경우에는 이사의 결의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식으로 사채를 배정하여야 한다.
- 1.사채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는 자의 유형을 분류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의 청약자에게 사채를 배정하는 방식
 - 2.주주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사채인수의 청약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 청약되지 아니한 사채가 있는 경우 이를 불특정 다수인에게 사채를 배정받을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
 - 3.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가 인수인 또는 주선인으로서 마련한 수요예측 등 관계 법규에서 정하는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특정한 유형의 자에게 사채인수의 청약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
- ③신주인수를 청구할 수 있는 금액은 사채의 액면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이사회가 정한다.
- ④신주인수권의 행사로 발행하는 주식은 사채의 액면총액 기준 팔천억원 범위내에서 보통주식, 이천억원 범위내에서 종류주식으로 하고 그 발행가액은 액면금액 또는 그 이상의 가액으로 사채발행시 이사회가 정한다.
- ⑤신주인수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은 당해 사채발행일 익일부터 그 상환기일의 직전일까지로 한다. 그러나 위 기간내에서 이사회결의로써 신주인수권행사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13조의 5(동등배당) 본 회사는 배당 기준일 현재 발행(전환된 경우를 포함한다)된 동종 주식에 대하여 발행일에 관계 없이 모두 동등하게 배당한다.

제13조의 6(주식매수선택권)

- ①본 회사는 임·직원(상법 시행령 제30조에서 정하는 관계회사의 임·직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에게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의 범위내에서 주식매수선택권을 주주총회의 특별결의에 의하여 부여할 수 있다.
- ②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을 자는 회사의 설립·경영과 기술혁신등에 기여하거나 기여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임·직원으로 하되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
 1. 최대주주(상법 제542조의 8 제2항 제5호의 최대주주를 말한다. 이하 같다) 및 그 특수관계인(상법 시행령 제34조의 제4항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 다만, 당해법인의 임원이 됨으로써 특수관계인에 해당하게 된 자(그 임원이 계열회사의 비상근임원인 자를 포함한다)는 제외한다.
 2. 주요주주(상법 제542조의 8 제2항 제6호의 주요주주를 말한다. 이하 같다) 및 그 특수관계인. 다만, 당해법인의 임원이 됨으로써 특수관계인에 해당하게 된 자(그 임원이 계열회사의 비상근임원인 자를 포함한다)는 제외한다.
 3.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주요주주가 되는 자
- ③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교부할 주식은 기명식 보통주식으로 하며,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시는 기발행 자기주식을 교부하거나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과 시가와의 차액을 현금 또는 기발행 자기주식으로 교부하는 방식으로 한다.
- ④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 대상이 되는 임·직원의 수는 재직하는 임·직원의 100분의 10을 초과할 수 없다.
- ⑤주식매수선택권은 제1항의 결의일부터 3년이 경과한 날로부터 2년내에 행사할 수 있으며,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자는 제1항의 결의일부터 2년이상 재임 또는 재직하여야 행사할 수 있다. 다만,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자가 제1항의 결의일부터 2년 이내에 사망하거나 기타 본인의 귀책사유가 아닌 사유로 퇴임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행사기간동안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정년에 따른 퇴임이나 퇴직은 본인의 귀책사유가 아닌 사유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 ⑥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로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를 취소할 수 있다.
 1. 당해 임·직원이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후 임의로 퇴임하거나 퇴직한 경우
 2. 당해 임·직원이 고의 또는 과실로 회사에 중대한 손해를 초래하게 한 경우
 3. 당해 법인의 파산 또는 해산 등으로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에 응할 수 없는 경우
 4. 기타 주식매수선택권 부여계약에서 정한 취소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13조의 7(이익소각)

- ①본 회사는 주주에게 배당할 이익으로써 주식을 소각할 수 있다.
- ②소각의 목적, 소각할 주식의 종류와 총수, 소각하기 위하여 취득할 주식가액의 총액

및 주식을 취득하는 기간등 세부적인 사항에 대하여는 이사회가 결의로 정한다.

제13조의 8(사채의 발행)

- ①본 회사는 이사회가 결의에 의하여 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 ②제1항에 불구하고 이사회는 대표이사에게 사채의 금액 및 종류를 정하여 1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기간 내에 사채를 발행할 것을 위임할 수 있다.

제13조의 9(사채 및 신주인수권증권에 표시되어야 할 권리의 전자등록)

본 회사는 사채권 및 신주인수권증권을 발행하는 대신 전자등록기관의 전자등록계좌부에 사채 및 신주인수권증권에 표시되어야 할 권리를 전자등록한다.

제14조(삭제)

제15조(삭제)

제16조(삭제)

제17조(삭제)

제18조(삭제)

제19조(삭제)

제20조(기준일)

- ①본 회사는 매년 12월 31일 최종의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를 그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에서 권리를 행사할 주주로 한다.
- ②본 회사는 임시주주총회의 소집 기타 필요한 경우 이사회가 결의로 정한 날에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를 그 권리를 행사할 주주로 할 수 있으며, 회사는 이사회가 결의로 정한 날의 2주간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20조의 2(주주명부 작성·비치)

- ①본 회사는 전자등록기관으로부터 소유자명세를 통지받은 경우 통지받은 사항과 통지연월일을 기재하여 주주명부를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 ②본 회사는 5% 이상 지분을 보유한 주주(특수관계인 등을 포함한다)의 현황에 변경이 있는 등 필요한 경우에 전자등록기관에 소유자명세의 작성을 요청할 수 있다.
- ③본 회사는 전자문서로 주주명부를 작성한다.

제3장 주 주 총 회

제21조(소집)

- ①본 회사의 정기주주총회는 제20조 1항에서 정한 기준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소집하고 임시주주총회는 그 필요에 따라 수시 이를 소집하되 법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사회결의에 의하여 대표이사가 소집한다.
- ②주주총회를 소집함에는 그 일시, 장소 및 회일의 목적사항을 총회일 2주간전에 주주에게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 ③의결권있는 발행주식총수의 백분의 일이하의 주식을 소유한 주주에 대한 소집 통지는 총회일 2주간전에 총회소집의 뜻과 회의목적사항을 서울특별시내에서 발행되는 일간 동아일보와 한국경제신문에 각각 이회이상 공고하거나 금융감독원 또는 한국거래소가 운용하는 전자공시시스템에 공고함으로써 제2항의 소집통지에 갈음할 수 있다.

제22조(소집지와 개최방식)

- ①주주총회는 본점소재지에서 개최하되 필요에 따라 이의 인접 지역에서도 개최할 수 있다.
- ②회사는 상법 제542조의14 제1항에 따라 주주의 일부가 소집지에 직접 출석하지 아니하고 원격지에서 전자적 방법에 의하여 결의에 참가할 수 있는 방식의 총회를 개최한다.

제23조(의장)

- ①주주총회의 의장은 대표이사로 한다.
- ②대표이사 유고시에는 사장, 부사장, 상무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23조의 2(의장의 질서유지권)

- ①주주총회의 의장은 고의로 의사진행을 방해하기 위한 발언·행동을 하는 등 현저히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자에 대하여 그 발언의 정지 또는 퇴장을 명할 수 있다.
- ②주주총회의 의장은 의사진행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주주의 발언의 시간 및 회수를 제한할 수 있다.

제24조(의결권) 주주는 그 소유주식 일주에 대하여 일개의 의결권을 가진다. 단, 법률에 다른 규정이 있을 때는 그에 따른다.

제25조(의결권의 대리행사)

- ①주주는 대리인으로 하여금 그 의결권을 행사하게 할 수 있다.
- ②제1항의 대리인은 주주총회 개시전에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 또는 전자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26조(의결방법) 주주총회는 법률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 하되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이상의 수로 하여야 한다.

제27조(의사록) 주주총회의 의사진행에 관하여는 그 경과요령과 결과를 의사록에 기재하고 의장과 출석한 이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 본 회사에 보존한다.

제4장 이사 · 이사회 · 감사위원회

제28조(이사의 선임)

- ①본 회사의 이사는 삼인이상 구인이내로 두되 주주총회에서 이를 선임한다.
- ②본 회사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이사 중에서 회장, 부회장, 사장, 부사장, 상무 각 약간명을 선임할 수 있다.
- ③본 회사를 대표하는 이사는 회장, 부회장, 사장, 부사장, 상무 중에서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선임한다.

제29조(이사의 임기)

- ①이사의 임기는 취임후 3년내의 최종의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 종결시까지로 한다.
- ②이사의 결원이 생긴 때에는 임시주주총회 또는 정기주주총회에서 이를 선임한다. 그러나 이사의 결원이 생겨도 법정원수를 결하지 아니하고 업무수행상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0조(이사의 직무)

- ①회장은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 ②대표이사는 본 회사를 대표하고 회사의 모든 업무를 통할한다. 대표이사가 수인인 경우 이사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각자 회사를 대표한다.
- ③사장, 부사장, 상무는 대표이사를 보좌하고 그 소관업무를 담당 수행한다.
- ④회장 결원 또는 유고시에는 부회장, 사장, 부사장, 상무 순으로 직무를 대행한다.
- ⑤전항의 부회장, 사장, 부사장, 상무가 복수인 경우에 각 그 직무를 대행할 순위는 미리 이사회에서 정하여진 순위에 따른다.

- ⑥이사는 회사에 현저하게 손해를 미칠 염려가 있는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즉시 감사위원회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31조(이사회)

- ①이사회는 이사회로서 조직하고 주주총회의 권한으로 되어있는 사항을 제외한 본 회사 업무의 모든 중요사항을 의결한다.
- ②이사회는 회장이 소집하고 의장이 되며 회일을 정하여 적어도 1주일 전에 각 이사에게 문서 또는 구두로 통지하여야 한다.
- ③이사 전원의 동의가 있을 때에는 전항의 절차없이 언제든지 소집할 수 있다.
- ④이사회는 결의는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의 과반수로 한다.
- ⑤이사회는 이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모든 이사가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통신수단에 의하여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이사는 이사회에 직접 출석한 것으로 본다.
- ⑥이사회는 의사에 관하여는 안전, 경과요령, 그 결과, 반대하는 자와 반대이유를 의사록으로 작성하고 의장과 출석한 이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 본 회사에 보존한다.

제31조의 2(위원회)

- ①본 회사는 이사회내에 다음 각호의 위원회를 둔다.
1. 감사위원회
 2. 독립이사후보추천위원회
 3. 기타 이사회가 정하는 위원회
- ②각 위원회의 구성, 권한, 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이사회는 결의로 정한다.
- ③위원회에 대해서는 제31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32조(삭제)

제32조의 2(감사위원회)

- ①본 회사는 감사에 갈음하여 제31조의2의 규정에 의한 감사위원회를 둔다.
- ②감사위원회는 3인 이상의 이사로 구성되며, 위원 중 1인 이상은 회계 또는 재무전문가이어야 한다.
- ③위원의 3분의 2 이상은 독립이사이어야 하고, 독립이사가 아닌 위원은 상법 제542조의10 제2항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 ④감사위원회 위원은 주주총회에서 이사를 선임한 후 선임된 이사 중에서 감사위원을 선임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감사위원회 위원 중 2명은 주주총회 결의로 다른 이사들과 분리하여 감사위원회 위원이 되는 이사로 선임하여야 한다.
- ⑤감사위원회 위원의 선임은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 하되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이상의 수로 하여야 한다. 다만, 상법 제 368조의4 제1항에 따라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한 경우에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써 감사위원회 위원의 선임을 결의할 수 있다.

⑥감사위원회위원은 상법 제434조에 따른 주주총회의 결의로 해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제4항 단서에 따른 감사위원회 위원은 이사와 감사위원회 위원의 지위를 모두 상실한다.

⑦감사위원회 위원의 선임과 해임에는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을 초과하는 수의 주식을 가진 주주(최대주주인 경우에는 그의 특수관계인, 그 밖에 상법시행령으로 정하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을 합산한다)는 그 초과하는 주식에 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⑧감사위원회는 그 결의로 위원회를 대표할 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인의 위원이 공동으로 위원회를 대표할 것을 정할 수 있다. 단, 위원회를 대표할 자는 독립이사 중에서 선임한다.

⑨감사위원회는 본 회사의 회계와 업무를 감사한다.

⑩감사위원회는 회의의 목적사항과 소집의 이유를 기재한 서면을 이사회에 제출하여 임시주주총회의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

⑪감사위원회는 그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자회사에 대하여 영업의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회사가 지체없이 보고를 하지 아니할 때 또는 그 보고의 내용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자회사의 업무와 재산상태를 조사할 수 있다

⑫감사위원회는 외부감사인을 선정한다.

⑬감사위원회는 제9항 내지 제12항 외에 이사회가 위임한 사항을 처리한다.

⑭감사위원회는 감사에 관하여 감사록을 작성하여야 하며, 감사록에는 감사의 실시요령과 그 결과를 기재하고 감사를 실시한 감사위원회 위원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제33조(이사의 보수) 이사의 보수는 주주총회의 의결로써 이를 정한다.

제34조(이사의 퇴직금) 이사의 퇴직금은 별도로 정하는 임원퇴직금 지급규정에 따른다.

제5장 계 산

제35조(사업년도) 본 회사 사업년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36조(재무제표의 작성)

- ①본 회사의 대표이사는 정기주주총회 회일의 육주간전에 다음의 서류와 그 부속명세서 및 영업보고서를 작성하여 감사위원회의 감사를 받아 정기주주총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대차대조표
 2. 손익계산서
 3. 그 밖에 회사의 재무상태와 경영성과를 표시하는 것으로서 상법시행령에서 정하는 서류
- ②본 회사가 상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연결재무제표 작성대상회사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각 서류에 연결재무제표를 포함한다.
- ③감사위원회는 정기주주총회일의 일주일전까지 감사보고서를 대표이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6조의 2(외부감사인의 선임) 회사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위원회가 선정한 외부감사인을 선임하며, 그 사실을 선임한 이후에 소집되는 정기총회에 보고하거나,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주에게 통지 또는 공고하여야 한다.

제37조(이익금처분) 본 회사는 매사업년도의 처분전이익잉여금을 다음과 같이 처분한다.

- ①이익준비금
- ②기타의 법정적립금
- ③배당금
- ④임의적립금
- ⑤기타의 이익잉여금처분액

제38조(이익배당)

- ①이익의 배당은 금전과 주식 및 기타의 재산으로 할 수 있다.
- ②이 회사는 이사회결의로 제1항의 배당을 받을 주주를 확정하기 위한 기준일을 정할 수 있으며, 기준일을 정한 경우 그 기준일의 2주 전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 ③배당금의 지급청구권은 오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하며 시효의 완성으로 인한 배당금은 본 회사에 귀속한다.
- ④이익의 배당을 주식으로 하는 경우 회사가 종류주식을 발행한 때에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그와 다른 종류의 주식으로도 할 수 있다.

제38조의 2(중간배당)

- ①본 회사는 사업연도중 1회에 한하여 6월 30일 최종의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 또는 등록질권자에게 상법 제462조의3에 의한 중간배당을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중간배당은 금전으로 지급한다.
- ②제1항의 중간배당은 이사회결의로 하되, 그 결의는 제1항의 기준일 이후 45일 내에 하여야 한다.

제6장 보 칙

제39조(적용범위) 본 정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상법 또는 기타 법령에 의한다.

제40조(내규제도) 본 회사는 필요에 따라 이사회결의로 업무추진 및 경영상 필요한 세칙내규를 정할 수 있다.

제41조(발기인의 성명과 주소) 위 주식회사를 설립하기 위하여 본정관을 작성하고 발기인 전원이 기명날인하다.

	1969년	12월	일
서울특별시 중구 장충동 1가 33번지의 9호	구	철	회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동 258번지의 22호	구	정	회
서울특별시 종로구 원서동 136번지	구	자	경
서울특별시 종로구 옥인동 45번지의 10호	허	준	구
서울특별시 성동구 신당동 333번지의 59호	허	신	구
서울특별시 중구 장충동 1가 89번지의 3호	박	승	찬
서울특별시 종로구 관철동 45번지의 1호	주식회사 낙희화학공업사		

부 칙(1996. 2. 23)

본 정관은 1996년 2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3조, 제13조의 3, 제13조의4, 제17조, 제26조, 제27조, 제30조, 제31조, 제32조, 제38조의 개정규정은 1996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9. 6. 9)

본 정관은 1999년 6월 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0. 3. 17)

본 정관은 2000년 3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1. 3. 2)

본 정관은 2001년 3월 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2. 3.20)

본 정관은 2002년 3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3. 2.26)

본 정관은 2003년 2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5. 3.18)

본 정관은 2005년 3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8. 3.7)

본 정관은 2008년 3월 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9. 3.20)

본 정관은 2009년 3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0. 3.19)

본 정관은 2010년 3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의 개정규정은 2010년 5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1. 3.25)

본 정관은 2011년 3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2. 3.23)

본 정관은 2012년 3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3조의 8, 제31조 및 제36조의 개정규정은 2012년 4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4. 3.21)

본 정관은 2014년 3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7. 3.24)

본 정관은 2017년 3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3조의 3, 제13조의 4의 규정은 정관 개정일 이후 발행되는 분부터 새로이 계산하는 것으로 한다.

부 칙(2018. 3.23)

본 정관은 2018년 3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9. 3.22)

본 정관은 2019년 3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 제10조, 제12조, 제13조의 9, 제16조, 제17조, 제18조 및 제19조 개정내용은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시행되는 2019년 9월1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0. 3.27)

본 정관은 2020년 3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1. 3.26)

본 정관은 2021년 3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2. 3.25)

본 정관은 2022년 3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4. 3.29)

본 정관은 2024년 3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5. 3.25)

본 정관은 2025년 3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6. 3.24)

제1조(시행일) 본 정관은 2026년 3월 2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소집지와 개최방식 및 의결권의 대리행사에 관한 경과조치) 제22조 및 제25조 개정규정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3조(독립이사에 관한 경과조치) 제31조의 2, 제32조의2(제4항 및 제7항 제외) 개정규정은 2026년 7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제4조(집중투표에 관한 적용례) 제28조 개정규정은 2026년 9월 10일 이후 최초로 이사의 선임을 위한 주주총회 소집이 있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감사위원 분리선임 인원 상향에 관한 경과조치) 제32조의 2 제4항 개정규정은 2026년 9월 10일부터 시행하되, 시행일 이전까지 감사위원회 위원 2명을 분리선출한다.

제6조(감사위원 선·해임 시 의결권 제한에 관한 경과조치) 제32조의 2 제7항 개정규정은 2026년 7월 23일부터 시행한다.